

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년 9월 16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9월 6일, 고성미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6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2년 9월 16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49조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9조 및 제29조에 따라 관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·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)
- 청소년안전망 구축(안 제5조)
-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설치(안 제6조)
-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7조)
-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등(안 제8조~제9조)
-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- 본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 대응 및 지원에 필요한 청소년안전망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의원발의되었으며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2) 주요내용

- 조례상의 정의(안 제2조)
「청소년 기본법」 및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의 관련 조항에 따라 조례의 정의를 규정함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)
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필요 대책 마련에 관하여 구청장 책무를 명시함
- 청소년안전망 구축(안 제5조)
청소년안전망 구축 시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고 청소년안전망 사업을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규정함
-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7조)
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기능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」을 적용함
-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(안 제8조~제9조)
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
 -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을 명시함
 - 상담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 기준과 종사자 자격기준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을 따름

다. 검토의견

- 현재 학교폭력 심화, 해체 가정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위기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관리체계의 필요성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임.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심각하게 발생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 대응 및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입법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